

 영광군	<h1>옥당골소식</h1>	제543호 2021.2.25.(목)
--	----------------	------------------------

♡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

목 차

I. 군정 소식

1.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3
2. 다동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5
3.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6
4.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7
5.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안내8
6.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안내9
7.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11
8.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12
9.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13
1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14
11.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15
12.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안내15
13.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참여업체 모집16

14.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신청 안내17
15. 광주 송정역 버스정류장 이전 운행 18
16. 태양광·태양열 지원사업 안내20
1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21
18.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22
19.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23
20.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24
21.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추가연장25
22. 미세먼지 감축 대응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지원26
23. 실내 소독의 날 운영27
24.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접수28

목 차

II. 기타 소식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사항 안내30
2. 동절기 지구를 지켜요33
3. 고농도미세먼지대응요령34
4. 드론 실명제 안내3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정착 유도 및 결혼·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사업량 : 25가구('21년 신규 모집) ※ '20년 선정 지원 : 21가구
- 신청자격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거주조건 : 가구원(부부, 자녀)이 전세주택(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반기별(6월, 12월)
- 지급액 :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납입 월 수)

대출잔액 기준(최초 신청 시)	월정액(연 최대 지원액)
1억 원 이상	15만 원(18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만 원(120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5만 원(60만 원)
3천만 원 미만	3만 원(36만 원)

※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제출서류

-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와 배우자 주소가 다른 경우 각각 발급(관내 주소일 경우만 해당)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⑤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 1부.
 - 부부 모두 발급
- ⑥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1부.
- ⑦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직인 날인
- ⑧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1부.
- ⑨ 부부 소득 확인서류 각 1부.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증명 서류
- ⑩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350-5256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신규)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전남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영광군에 주
소를 두는 경우, 타 시군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 지원신청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와 동일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①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②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③ 통장사본(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읍·면 민원실 자격확인 및 신청서 접수→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 송부(인구일자리정책실) → 신청 다음달 15일
통장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350-4672)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신규)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21. 1. 1.)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군에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기념품세트 (친환경유아용빨랑이세트, 탄생축하카드,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티커) 지급

□ 지원신청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와 동일

- 신청서류

- ①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②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③ 기념품지급 수령대장 서명

□ 지원절차

- 읍·면 민원실 자격확인 및 신청서 접수→기념품 지급 수령대장 서명
→ 축하기념품 지급결과 다음달 5일까지 송부(인구일자리정책실)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350-4672)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규)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 건강보험 적용횟수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 (연2회)

시술방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 방식과 동일

□ 지원대상 자격조사

-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난임 여부 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 수급권은 해당 난임부부에게 부여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양육비(출산지원금) 50만원 지원
 - ※ 2021.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1년 이전 출생아 기준 30만원)

□ 지원신청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와 동일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①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②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③ 통장사본(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읍·면 민원실 자격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 송부(인구일자리정책실) → 신청 다음달 15일 통장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3, 350-4672)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및 내용

시술 종류 및 횟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 횟수)			정 부 지 원		군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횟수 동일)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150만원 이내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내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내	
	4~5회	20만원			

※ 정부·군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술 시작일 20. 1. 1.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횟수에 한하여 매 회 시술종류 및 기준대로 지급
(이전 시술자는 종전대로 지원)

○ 정부지원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의료기관 시술 전 군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자격 판정 필요

○ 군비 추가지원

- 시술별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횟수에 한하여**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정부지원 해당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우선 적용 후 군비 차액 지원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군비 추가지원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명, 시술기간, 차수, 임신여부 반드시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치료기간이 의사소견서 상의 시술기간과 동일)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지원절차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 완료 → 서류 검토 후 지급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완료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서류 검토 후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원(1인당 1회 한함)
- 택시 및 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로 결제

□ 지원신청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 출산팀
- 제출서류
 -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 임신사실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지원절차

- 임신 사실 확인서 지참 →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청 → 임신부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 교통카드 발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출생 등록한 가정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 원 방 법
첫째아	500	500만원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1,200	1,200만원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씩 36개월
셋째아 다섯째아	3,000	3,000만원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씩 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	3,500만원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씩 59개월

※ 첫달 지급액 중 50만원 영광사랑 카드로 지급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됨

□ 자녀의 순위결정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지원신청 및 절차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읍·면) → 다음달 5일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송부 →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 통장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부부 중 한 명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 이내
 - 2년간 3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50만원, 3회 150만원)
 - ※ **첫회 지급액 중 50만원 영광사랑 카드로 지급**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지원절차
 - 혼인신고 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읍·면) → 다음달 5일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송부 →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통장 지급
 -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이혼 또는 지원대상자 관외 전출시 지원중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도내 병의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 지원내용 : 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1인1회
- 검진항목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항목 중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구분	여 성	남 성
검진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 지원절차
 - 검진안내→ 검진실시→ 검진비용청구 신청서 작성(대상자)→ 서류검토 및 지급확정→**검진비 지원(인구일자리정책실)**

□ 신청서류

구분	신 혼 부 부	예 비 부 부
공통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추가	⑦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⑥ 예식장계약서 1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복원 수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 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 55세, 여자 만 49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남자 80만원이내, 여자 150만원 이내)
※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이외 진료비 및 비급여 금액 중 상급병실료, 가족식대는 지원제외

□ 제출서류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술 확인서 1부, 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350-4672, 350-4673, 350-4813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안내

-1월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기간 : 2021. 1. 1.부터 연중

□ 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족

□ 신청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반영
-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고재산(9억 원)인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방문 신청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참여업체 모집

□ 기 간 : 연중 수시모집

□ 참여대상

-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유아용품, 학원, 안경, 음식점, 이·미용업 등 업체(모든 제조, 서비스업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전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 출산지원팀
 - 도(인구청년정책관), 군(일자리정책실)에서 구비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군청 제출시 군에서 도에 전달 조치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팩스(061-286-4762)제출, 전화 확인(061-286-2853) ※ 홈페이지 : <http://jnhappy.bccard.com>
- 신청서류 : 참여업체 신청서 1부(도청 및 읍·면 민원실, 보건소 상담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업체에 드리는 혜택

-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
- 참여업체 인증서 및 스티커 배부
- 업체명·취급품목연락처 등을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홍보 지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출산지원 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으로 문의 바람.
전라남도 ☎ 061)286-2853 / FAX 061-286-4762
영광군 ☎ 061-350-4672, 4673 / FAX 061-350-5622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350-4673, 350-4672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신청 안내

□ 기 간 : 연중

□ 신청대상

- 부모 중 1명이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서, 태아를 포함하여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 ' 21년은 ' 08년 이후 출생자

□ 신청방법

- 전국 농협(중앙 및 단위) 방문하여 가입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태아 포함의 경우)

□ 카드사용 혜택

- 연회비 면제(가입초년 제외)
- 전국 백화점 등 BC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 영화(CGV, 롯데시네마) 1,500원 할인
- 학원업종 10% 할인, 서적 3% 할인
- 농협판매장(하나로클럽, 마트, 주유소) 5% 할인
- 서울랜드·롯데월드·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0%, 패밀리랜드 및 아산 스파비스 12,500원 할인
- 주유(GS칼텍스) 시 1 당 80원 포인트 적립
- 도내 가맹협력업체 이용 시 5%~30% 할인(800여개)
- 육아용품점, 대형마트, 학원, 사진관, 미용실, 음식점, 체육문화시설 등

※ 홈페이지 : <http://jnhappy.bccard.com>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350-4673, 350-4672)

광주 송정역 버스정류장 이전 운행

광주~영광 노선으로 운영하는 시외버스 광주 송정정류장을 기존 영광통 사거리 정류장에서 송정역(KTX) 앞으로 이전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운행합니다.

1. 운영일자 : 2021. 3. 1.(월)부터

2. 위 치 :

가. 기 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1 영광통 버스정류장

나. 변 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 송정역(KTX) 앞 정류장

3. 운영방법 : 간이버스정류장 설치(금호고속 운영)

4. 시설현황 : 간이버스정류장(무인자동발권기 2대 운영)

5. 버스노선

가. 시외버스

- 영광방면 노선 : 영광 17회(1일)

- 타 지역 노선 : 무안공항 9회, 목포 6회, 완도 3회(1일)

6. 버스 시간표

(광주~영광)

연번	광주발						
	광주	송정역	문장	군청	영광	법성	홍농
1	6:30	6:50	7:15		7:40		
2	7:00	7:20	7:45	8:10	8:15	8:25	8:35
3	7:35	7:55	8:20	8:45	8:50		
4	8:10	8:30	8:55	9:20	9:25	9:35	9:45
5	9:40	10:00	10:25		10:50	11:00	11:10
6	10:40	11:00	11:25		11:50	12:00	12:10
7	12:00	12:20	12:45		13:10		
8	13:10	13:30	13:55	14:20	14:25	14:35	14:45
9	14:00	14:20	14:45		15:10	15:20	15:30
10	15:00	15:20	15:45		16:10	16:20	16:30
11	16:00	16:20	16:45		17:10		
12	17:00	17:20	17:45		18:10	18:20	18:30
13	17:50	18:10	18:35		19:00	19:10	19:20
14	18:40	19:00	19:25		19:50	20:00	20:10
15	19:20	19:40	20:05	20:30	20:30	20:40	20:50
16	20:00	20:20	20:45		21:10		
17	21:10	21:30	21:55		22:20	22:30	22:40

(영광~광주)

연번	영광발						비고
	홍농	법성	영광	문장	송정역	광주	
1	6:40	6:47	7:00	7:15	7:40	8:05	
2	7:30	7:37	7:50	8:05	8:30	8:55	
3			8:20	8:35	9:00	9:25	
4			9:20	9:35	10:00	10:25	
5	10:00	10:07	10:20	10:35	11:00	11:25	
6	10:40	10:47	11:00	11:15	11:40	12:05	
7	12:00	12:07	12:20	12:35	13:00	13:25	
8	13:00	13:07	13:20	13:35	14:00	14:25	
9			14:20	14:35	15:00	15:25	
10	15:10	15:17	15:30	15:45	16:10	16:35	
11	16:10	16:17	16:30	16:45	17:10	17:35	
12	17:20	17:27	17:40	17:55	18:20	18:45	
13			18:20	18:35	19:00	19:25	
14	19:00	19:07	19:20	19:35	20:00	20:25	
15	19:50	19:57	20:10	20:25	20:50	21:15	
16			21:30	21:45	22:10	22:35	
17	21:40	21:47	22:00	22:15	22:40	23:05	연장운행

7. 기타 문의사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350-5649
 영광군청 홈페이지 > 영광소개 > 교통정보 > 시외버스

<https://www.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mn=1214>

(위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2022년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태양열 지원사업 안내

- 1 ▶ 신청기간 2021.2.8(월)~3.22(월)
- 2 ▶ 신청대상 백수읍 / 홍농읍 / 법성면 일원
- 3 ▶ 신청내용 태양광·태양열 설치
- 4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5 ▶ 신청서류 신청서/건축물대장/연간전기사용내역서
- 6 ▶ 상담문의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 350-5447

설치비용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및 지방비(85%)	자부담(15%)	
태양광	주택(3kw)	5,028,000	4,274,000	754,000
	건물(1kw당)	1,881,000	1,598,000	283,000
태양열	주택(10.2㎡)	10,791,000	9,717,000	1,074,000
	건물(1㎡당)	1,081,000	918,000	163,000

* 상기 금액은 사업 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현재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플러스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지원조건 : 1인당 연 48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 (유) 자연과 농부들, 전남 나주시 소재

□ 지원품목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통합몰 : www.ecoemall.com)

- 통합몰 접속 -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 임신부/산모 선택 후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시 임신·출산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 지원절차

- 신청(임산부) → 자격검증(읍·면) → 대상자 확정 및 고유번호 부여(읍·면) → 고유번호로 회원가입(임산부) → 주문·결제(임산부)
- 친환경농산물 주문 시 자부담 분(20%)만 결제 후 이용

문의 : 영광군청 농정과 ☎ 061-350-5382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2015.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연간 개인당 카드 1매(금액 10만원)
- 발급일 : 2021. 2. 1.(읍·면사무소 및 문화누리 홈페이지)
- 사업비 : 금320,000천원 [국226,000(71%) 도28,000(9%) 군65,400(20%)]
 - 최대 3,200매 발급가능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연 10만원**(1인당 지원금 상향 ⇒ 2020년 9만원)
 - **자동재충전제도** : 기존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도 지원금 10만원 카드 지급

2. 카드발급절차

- 기존발급자 : 자동재충전(자격유지 시)
- 신규발급자 : 읍·면사무소 방문 ⇒ 발급신청서작성 ⇒ 문화누리시스템에서 자격실시간 확인 ⇒ **카드발급 2시간 후 사용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3. 주요 사용처 : 서점, 공연, 영화, 축제, 여행, 교통, 스포츠 등

4.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문화관광과(350-5226) 및 각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1. 15.(금) ~ 2. 28(일)

※ 신청기간 종료후 잔여사업량 발생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가. 영광군에 지방세 체납이 없고(공동명의자 포함), LNG(도시가스)연료로 하는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및 교체하고자 하는 영광군민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이어야 함.

- 가구주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세입자가 신청가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지원대수 : 일반가정 30대

□ 지원금액 : 1대당 20만원

□ 지원대상 보일러: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 신청서 및 선정기준 :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 영광군청 도시환경과 ☎ 061-350-5332 및 영광읍사무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21.3.25.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제도 현황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0.3.25.~)

- (검사대상)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일 300kg이상* 가축분 배출 농가
 * 한우 264㎡(22두), 젓소 120㎡(10두), 돼지 161㎡(115두), 산란계 2,400수·육계 3,500수 등
- (검사기준) 배출시설 규모(1,500㎡ 미만/1,500㎡ 이상) : 부숙중기/부숙후기
- (검사주기) 배출시설 규모(신고/허가) : 연 1회/연 2회

※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퇴비부숙도 미 검사 및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시 행정처분 대상

- 허가규모(50~200만원), 신고규모(30~100만원)

◆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21.3.24.까지) 제도기간 부여

□ 퇴비부숙도 검사 방법

○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 시료채취 방법



○ 유의사항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는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

□ 문의: 영광군청 유통축산과 ☎ 350-5408 및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추가연장

□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안내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제적 피해를 덜어 주고자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과 절차는 별도 없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 등록 후 임대사용 당일 즉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적용됩니다.(단 회원등록 시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1부,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출)

□ 감면안내

- 개 소 수: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분소, 남부분소)
- 보유대수: 150종 1,579대
- 감면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타 지역에서 출입 군 관내 농경지 경작자
- 감면내용: 농가당 1일 1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사유로 중복감면은 불가
- 감면신청: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즉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등록 시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1부,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출



□ 문의전화 및 찾아오시는 길

- 본 소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57-25 ☎061)350-4834
- 북부분소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 195 ☎061)350-4685
- 남부분소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626-3 ☎061)350-4688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감축 대응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지원

□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안내

영농부산물(고춧대, 옥수수대, 감 전정 잔가지, 오디 전정 잔가지 등)의 관행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소각으로 산불과 각종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잔가지파쇄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 3종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약5개월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단체(마을협의체, 마을이장, 농업인단체) 및 개인농가 누구나 가능하며, 농기계 임대료 무상 신청과 절차는 별도 없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 등록 후 임대사용 당일 즉시 농기계 임대료가 무상으로 적용됩니다.

(단 회원등록 시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1부,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출)

당부사항으로는 무상임대로 임대문의가 많아 당일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일 이전 사전예약 일정을 문의하여 주시고, 고위험성 농기기로 안전한 사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잔가지파쇄기 안내



- 기 종 명: 잔가지파쇄기
- 형 식: 자주식
- 파쇄굵기: 직경 50mm



- 기 종 명: 잔가지파쇄기
- 형 식: 트랙터식(파쇄방식)
- 파쇄굵기: 직경 100mm



- 기 종 명: 잔가지파쇄기
- 형 식: 트랙터식(로타방식)
- 파쇄굵기: 직경 30mm

□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 찾아오시는 길
 - 본 소: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57-25 ☎061)350-4834
 - 북부분소: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 195 ☎061)350-4685
 - 남부분소: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626-3 ☎061)350-4688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매주 수요일은 「실내 소독의 날」 운영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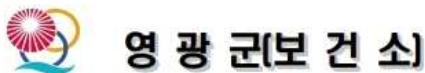
□ 소독방법은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닦아주기

-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영 광 군(보 건 소)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접수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함.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2년간)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접수대상 :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및 권위주의 통치까지의 항일운동, 의문사, 인권침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 신청대상 : 희생자 또는 유족 등 친족관계, 목격자 등
- 근거법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20.12.10.시행)
☞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자 보상 규정 없음(국회 논의 중)
※ 진실화해위원회(1기) 활동 : 2006년 ~ 2010년 *공식출범(2005. 12. 1)

□ 세부사항

1] 진실규명 신청

가. 신청대상자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를 말함
※ 전해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나. 신청방법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
- 진실규명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

② 진실규명의 범위

- 가.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나.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법률 제7542호)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 마.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접수(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 3393-9700 *2020.12. 10. 개통예정
- 영광군청 총무과
 - 주소 :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 과거사업무담당자
 - 전화 : (061) 350-572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 **적용기간** : 2021. 2. 5.(월) 0시 ~ 2. 28.(일) 24시
- **대상지역** : 전라남도 전지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사항**

《완화 불가능한 조치》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1.5단계 방역 조치사항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백림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 (신고·협의)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② 다중이용시설 : 증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1.5단계 방역 조치사항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룸당 최대 4명 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중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제한시간 해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제한시간 해제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제한시간 해제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접기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제한시간 해제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제한시간 해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예외적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실내외 사설 경기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권고) 음식물 섭취 자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1.5단계 방역 조치사항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권고)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오락실· 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권고) 음식물 섭취 자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권고)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 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3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유흥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지구를 지켜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딛는 생활 속 한 걸음!



온열시 생활습관!

기온이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과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해 냉방되는 전력과 온실가스를 줄여요!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ZERO)가 되는 것!

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함께하기!!

- 

1
온열시·실내 적정온도 유지
- 

2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 제품 사용
- 

3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 

4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걸기
- 

5
친환경·저탄소 제품 소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숙면저민용) 착용하기

1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체재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옷물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울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드론 실명제' 안내

□ 드론 실명제란?

드론 실명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드론 최대이륙중량 2kg이 초과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 되었습니다. 더불어 드론 조종자격을 4단 계로 세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드론 실명제 등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드론 등록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절차는 인터넷 사이트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에서 등록(신규신고·변경·말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 실명제 미이행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드론 분류기준은 4단계로 관리되며 세부분류로는 ▲고위험 1종(25kg 초과~150kg)은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기존방식), ▲2종(7kg 초과~25kg)은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3종(2kg 초과~7kg)은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4종(250g 초과~2kg)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는 비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합니다.

□ 기체등록

- 등록대상: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 등록방법: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
- 등록기한
 - 기존보유기준: 2021년 6월 30일까지
 - 신규가입기준: 구입 시 즉시

□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

- 1종 고위험(25kg 초과~150kg)은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2020년 제도와 동일
- 2종 중위험(7kg 초과~25kg)은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 3종 저위험(2kg 초과~ 7kg)은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 4종(250g 초과~2kg)은 온라인 교육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는 비행기준을 준수하여 자격 없이 누구나 운용 가능

□ 문의전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차봉수 과장(☎ 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제도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이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기존	변경
각 관할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신고대상 범위

종전		변경 (최대이륙중량** 기준)			
		구분	중량	신고여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시 신고	비사업용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	250g 이하	불필요
			저위험	250g 초과 ~ 2kg	불필요
			중위험 고위험	2kg 초과 ~ 7kg	소유자신고
			사업용	7kg 초과	소유자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드론을 제외한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범위는 종전과 동일

* 자체중량: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중량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 장비는 비행과 관련이 없고 탈부착 및 적재 가능한 것을 의미)

** 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

위반 사항	처벌 조항	처벌 기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4항 제4호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1호	과태료	1차 위반 15만원
			2차 위반 22.5만원
			3차 위반 30만원